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지원

나 주요골자

○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국가유공자에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등기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

—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내에 취득, 등기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국가유공자에유등에관한법률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이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